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667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자 (제출일)	심사경과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331호)	정부	2024.11.07.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816호)	김상훈의원	2025.03.11.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04.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476호)	임호선의의원	2025.07.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8.2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479호)	송옥주의의원	2025.12.2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03.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365호)	문대림의원	2026.03.11.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04.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139호)	윤준병의원	2026.04.07.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08.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60호)	송옥주의원	2026.07.15.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08.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	-------	-------------	--

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해사안전의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임.

그런데 최근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등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설 설치 이후의 항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또한, 약물운항,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소형선박 음주운항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거나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개정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고, 증서의 비치나 효력정지 등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불합리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약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그 이행을 점검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나.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보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다. 운항자·도선사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42조).

라. 항해당직 또는 도선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을 금지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을 전자문서로 갖추어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정지 범위를 조정함(안 제51조).

바. 약물운항·측정 불응과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을 신설·강화하고, 새로 부과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정비함(안 제113조의2 신설, 제114조, 제115조 및 제118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선박”을 “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2장에 제4절(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

제12조의2(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안전수역”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역 내 해상풍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3개월 전에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수역의 변경 등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개발사업을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교통 및 해양 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3(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을 위한 조치와 절차 등은 제6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이행 시한을 명시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안전수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4(이행강제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 시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유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 ①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관할 해역 내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및 섭취(이하 “투약등”이라 한다)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물·환각물질 투약등을 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약물·환각물질 투약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항행안전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2.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을 보는 행위

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

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모든 선박”을 “선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의 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벌칙)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에 제7호의2·제7호의3·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착공한 자

7의3.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4의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14의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제11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 본문 중 “제116조까지의”를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1. 제12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
- 2의3.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14조제7호의2 및 제7호의3,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어 개발사업에 착공하였거나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 풍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개발사업에 착공하였거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가동 중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는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는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u>선박</u>	3. ----- ----- <u>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① · ② (생략)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③ ----- ----- ----- ----- ----- ----- -----.

한다.

1. ~ 4.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

<신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절 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

제12조의2(안전수역 설정 및 관
리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
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
법」(이하 “해상풍력법”이라 한
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풍
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
박의 항행안전 확보와 해상풍
력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
역(이하 “안전수역”이라 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역 내
해상풍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해
상풍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
발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작공하기 3개월 전에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수역의 변경 등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 설>

바에 따라 적합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적합확인서를 발급 받기 전에는 개발사업을 착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교통 및 해양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3(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

<신 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을 위한 조치와 절차 등은 제6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이행 시한을 명시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안전수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4(이행강제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 시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 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
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
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신 설>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①

-----, 다만,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유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 ①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실 컨테이너 주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생 략)

<신 설>

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
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
다.

② 항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
장은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
행하는 선박 및 인접국의 정
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
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대
한민국의 관할 해역 내에서 표
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
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
게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
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

<신 설>

을 투약, 흡연 및 섭취(이하 “투약등”이라 한다)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물·환각물질 투약등을 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약물·환각물질 투약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 설>

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항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
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
선사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
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
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
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정
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

하지 아니하다.

1.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2.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
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을 보는 행위

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제1
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제40
조제1항-----

-----.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정
지 요청) -----

「**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환
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
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
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
시한 경우

<신 설>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 제1항

4. 제4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신 설>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 ② (생략)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④ ~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선박

-----.

⑧ -----

-----사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의 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

제112조(벌칙)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

<삭제>

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2.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신 설>

<삭 제>

제113조의2(벌칙) ① 제4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
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
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
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
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0조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u>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③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④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14조(벌칙) ----- -----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4.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5. (생략)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117조(양벌규정) -----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4조부터 제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18조(과태료) ① 제35조를 위
 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
 거나 누설·변조·훼손한 자에
 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16조까지의-----

 -----.

 -----.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
 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
 조·훼손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 4.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 23. (생 략)

④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

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
거나 간접한 자

② -----

-----.

1. 제12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
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
하지 아니한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2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의무
를 위반한 자

2의3.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
1항-----

8. ~ 23.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간접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